

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 제2차 회의결과

1. 회의개요

□ 일 시 : ’06년 8월 30일(수), 14:00~16:00

□ 장 소 : 빈부격차·차별시정위원회 회의실 (알파빌딩 13층)

□ 참 석

○ 정 부

- 위원회 : 차별시정비서관 황덕순, 차별시정위원회 과장 남찬섭, 차별시정위원회 연구원 김소영 (3명)
- 부 처 : 노동부 장애인고용팀장 심경우, 건교부 도시교통팀사무관 이상주, 국조실 복지정책과장 민용기,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연구관 김은주, 법무부 인권정책과 서기관 홍관표, 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 김강립, 재정부 복지경제과장 김이태 (7명)
- 옵저버 :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팀장 정영선 (1명)
- 장애계 :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김동범, 장추련 법제위원장 박종운, 법제위 부위원장 김광이, 법제위원 유동철, 장추련 사무국장 박옥순 (5명)

2. 회의결과

□ 회의 내용

- 오늘 논의는 장차법 세부 쟁점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, 정부와 장애계 공히 공식적 의견이 아니라 실무 수준의 검토 의견을 교환하였음.
- 회의 시 논의된 쟁점
 -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
 - 차별의 개념 및 차별 판단, 차별 금지
 - 진정직업자격 관련
 -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의 보장

-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관련
- 시정명령,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의 전환

○ 정부의견

- 장애, 차별에 대한 개념 : 장애개념이나 차별의 개념이 포괄적임.
 - 일시적 장애, 합리적 배려 등은 개념이 너무 넓은 듯함. 외국의 경우(일본, 독일, 호주, 미국 등)에도 장애의 개념은 이렇게 넓지 않음
- 구제권한(시정명령, 징벌적 손해소 부분)의 정도 : 기존 법체계나 권한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함
- 법안의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, 구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애나 차별의 개념을 엄격하게 규정할 수밖에 없고, 장애나 차별의 개념을 넓게 잡으면 구제권한을 약화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장애계 의견

- 본 법안은 법안의 논리적 완성도 측면보다 장애인이 실제로 겪는 차별사안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실질적 측면을 감안하고 만들어진 것임
- 뿐만 아니라 복지적 관점에서 기존 법령의 각 분야 장애인 차별에 대한 금지 법안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나 이 법안은 기존법 내용에 추가적으로 인권적 관점의 차별 금지 사항들을 포함시켰다는 의의가 있음.
- 본 법안에 대해 합리적 의견 교환이 되길 희망함.

□ 다음 회의 안건

- 다음 회의에서는 오늘 들은 의견을 바탕으로 쟁점 토론을 하고
- 교육, 복지, 노동, 건교, 이외에 정통, 문광, 산자부 등 관련 부처는 장차법과 관련하여 해당 영역별로 기존 법률에서 상충, 중복,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점검해 오기 바람
- 다음 회의는 9월 13일(수) 오후 4시에 하기로 함